
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업종별수협 해산사유 중 조합원 수 요건을 현행 15인에서 수산물 가공수협 최소 조합원 수와 동일한 7인으로 완화하는 한편, 과거 지구별수협 최소 조합원 수 기준이 개정되면서 함께 정비되지 못한 준용규정의 오기(誤記)를 수정하려는 것임(안 제108조 및 제113조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병 섭)